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213
----------	-------

발의연월일 : 2025. 9. 24.

발 의 자 : 김영호·조계원·김동아
박상혁·서영교·신장식
이학영·박홍근·정을호
박주민·김현정·위성곤
김준혁·이병진·권칠승
이수진·조정식·김문수
윤준병·여기구·용혜인
김종민·김주영·이인영
의원(24인)

제안이유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특히 일부 사학재단 이사장 등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 이후 의도적으로 해외출장 일정을 잡아 3년 연속 불출석하는 등 국회 출석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임.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만 동행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어, 안건심의나 청문회 등에서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임. 또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출석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출석요구서 송달체계 구축과 비대면 환경을 반영한 원격영상출석 제도 도입을 통해 국회 증인의 출석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이에 국회의 모든 위원회 활동에 동행명령권을 확대 적용하고, 사전 통지제를 통해 증인의 고의적 회피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반복 회피의 증거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반복·상습적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전자송달시스템 도입과 원격영상출석 제도 신설을 통해 국회 국정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한정된 동행명령권을 “안건심의, 청문회”까지 전면 확대해 국회 위원회 활동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강제출석 권한을 확보함(제2조, 제6조제1항).

나. 사전통지제를 도입해 위원회가 증인 등에게 출석요구 전 사전통지를 통해 일정 조율 및 출석준비 협조 요구가 가능하도록 함. 사전통지를 받은 증인은 7일 이내 의무적으로 회신하도록 하여 고의적 회피행위 사전 차단 사전통지 회답의무 위반 후, 불출석 시 가중처

벌 대상으로 분류함(제5조의5 신설).

다. 실질적 강제력 확보와 동행명령 집행체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경찰, 출입국관리소 등)의 동행명령 집행 협조 의무를 명문화함. 해외출장 등을 통한 동행명령 회피 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 가능 의도적 출국을 통한 국회 출석 회피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보함(제6조제8항·제9항).

라. 국회 전자송달시스템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출석 요구서 송달 체계를 마련함. 전자문서 발송 후 7일 미확인 시 자동 송달 간주로 고의적 수령 회피 방지 송달 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함(제5조제6항).

마. 질병·입원, 천재지변, 구속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의장 또는 위원장 허가 하에 원격영상출석을 허용함. 원격영상출석 시에도 직접 출석과 동일한 법적 효력 부여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원격영상출석은 법적 효력을 부인해 남용을 방지함(제5조의4).

바.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정함. ①질병·입원, ②천재지변, ③법적 구속, ④기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해, 단순한 “업무상 사유”나 “개인적 사정”은 정당한 이유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함(제6조제1항 각 호).

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벌금 상한액을 1천만원 → 2천만원으로 인상하고 가중처벌을 신설함. 다음 행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함. 1. 같은 회기 중 2회 이상 불

출석(상습적 회피행위) 2. 동행명령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3. 반복적 전자송달 방해행위 4. 사전통지 회답의무 위반 후, 불출석. 반복적 위반 시 형량의 2분의 1까지 추가 가중하도록 강화함(제12조).

아. 국회 모욕죄의 벌금 하한액을 1천만원 → 2천만원으로 인상함(제13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 중 “안전심의”를 “안전심의, 청문회”로 한다.

제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의 요구서는 국회가 구축·운영하는 전자송달시스템 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식으로 송달하되, 그 밖에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메일 등 전자문서를 수신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전자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자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의4 및 제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원격영상출석)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제5조제4항에 따른 출석할 장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영상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원격영상출석을 한 경우에는 출석할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 선서 및 증언·감정·진술한 것

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격영상출석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원격영상출석의 절차, 신원확인 및 증언 방식 등 원격영상출석의 구체적인 기준과 운영에 관하여는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5(사전통지) ①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요구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준비 협조를 위한 사전통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출석준비 협조를 위하여 7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안전심의, 청문회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로, “정당한 이유 없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질병이나 중대한 신체 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2. 지진, 홍수,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국회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동행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하여 동행명령의 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증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같은 회기 중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동행명령의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자
3. 반복적으로 전자송달을 방해한 자
4. 제5조의5제3항에 따른 사전통지 회답의무를 위반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자

④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 또는 제3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3조제1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감정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u>안전심의</u>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 ----- <u>안전심의, 청문회</u> ----- ----- ----- ----- ----- ----- ----- ----- ----- -----.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 ⑤ (생략) ⑥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의 요구서는 <u>국회가 구축·운영하는 전자송달시스템 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식으로 송달하되, 그 밖에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메일 등 전자문서를 수신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전자문서를 받</u>

⑦ · ⑧ (생략)

<신설>

송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자문
서를 발송한 날부터 7일이 지
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5조의4(원격영상출석)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제5조제4항에 따른 출석할 장
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
가를 받아 원격영상출석(동영
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
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인·감정인
·참고인이 원격영상출석을 한
경우에는 출석할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 선서 및 증언·감정
·진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
구하고 원격영상출석 허가를

<신 설>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 그 밖에 원격영상출석의 절차, 신원확인 및 증언 방식 등
원격영상출석의 구체적인 기준
과 운영에 관하여는 국회 규칙
으로 정한다.

제5조의5(사전통지) ①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하
여 출석요구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준비 협조를 위한 사
전통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증
인·감정인·참고인은 출석준
비 협조를 위하여 7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 안전심의, 청문회 또는 국정감
사나 국정조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

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⑦ (생략)

<신 설>

<신 설>

1. 질병이나 중대한 신체 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2. 지진, 홍수,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국회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동행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하여 동행명령의 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상당한 우려가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신설>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증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

-----2천만원-----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같은 회기 중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동행명령의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자

3. 반복적으로 전자송달을 방해한 자

<u><신 설></u>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①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u>1천만원</u>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u>4. 제5조의5제3항에 따른 사전 통지 회답의무를 위반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자</u> <u>④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 또는 제3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① ----- ----- ----- ----- ----- -----<u>2천만원</u>----- ----- -----. ② (현행과 같음)
--	---